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09.03.01. 법학전문대학원 예규 제 6호
개정 2010.04.12. 법학전문대학원 예규 제14호
개정 2010.06.08. 법학전문대학원 예규 제15호
개정 2013.12.03. 법학전문대학원 예규 제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고 한다) 교육과정 및 이수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실습교육과정(이하 '실습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실습과정 편성 및 이수

제2조(실습과정 편성) ①실습과정은 리걸클리닉 참가 및 법원 · 검찰청 · 법률사무소 등 법조유관기관에서의 실무수습과 실습교육으로 편성한다.

②법조유관기관 실무수습과 리걸클리닉과정은 방학기간 중에도 개설한다.

③리걸클리닉 실무수습은 경북대학교 법률상담소(이하 법률상당소라 함)에서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경북대학교 법률상담소 리걸클리닉 실무수습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실습과정 이수) ①실습과정의 이수학점은 1학점으로 한다.

②실습과정의 이수시간은 실습교육 15시간, 리걸클리닉 참가 20시간, 법조유관기관 실무수습 40시간을 최소한으로 한다.

③법조유관기관 실무수습을 필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리걸클리닉 참가 기본 20시간 외의 추가적 참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실습과정 이수 중인 자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습교육과정 유보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습과정지도교수(이하 실습지도교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실습과정의 5분의 4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간을 당해과정에 포함시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징병검사, 징・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2. 천재지변,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수행이 어려울 때
3. 법학전문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잔여기간 실습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제4조(실습기관의 변경) 실습 중인 자가 실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습을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실습기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습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실습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제3장 실습교육의 내용

제5조(실습교육내용의 협의) 원장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실습과정의 교육내용이 충실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제4장 실습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

제6조(신청자격) 실습과정 신청자격은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제7조(수강신청) 실습과정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학기제 수강신청기간에 한다.

제8조(실습과정 신청서 제출) 실무수습을 하는 자는 소정의 시기에 실습과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습대상자의 선발) 실습과정 지도교수(이하 '실습지도교수'라 함)는 실습과정별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1. 동일한 협력기관의 수용정원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신청자가 취득한 학점 수, 성적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법조유관기관 실무수습의 실습대상자는 취득한 학점수, 성적 및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클리닉 과정의 실습대상자는 취득한 과목 및 성적 등 상담활동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구비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5장 실습지도 및 성적평가

제10조(실습지도) ① 원장은 이 대학원의 교수 약간 명을 위원으로 지명하여 실습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습교육위원회는 실습과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②원장은 실습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실습교육과정을 지도할 지도교수를 지정한다.

③실습생은 실습기간 종료 후 1주 이내에 실습지도교수에게 실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실습지도교수는 실습생의 실습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실습생과의 면담과 실습기관의 성적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실습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에 제출하고, 대학원은 이를 5년간 보관한다.

제11조(성적평가) 원장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실습과정의 교육담당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습성적을 평가하되, 학칙 제36조의 학업성적등급에 따르도록 한다.

1. 사례의 사실관계 분석 및 확정능력
2. 사례의 요건사실 추출능력
3. 법률상의 쟁점 추출능력
4. 의뢰인에 대한 상담능력
5. 법률조사능력
6. 법률문서 작성능력
7. 실습기간 중 출근상황

제6장 실습기관의 선정 및 협약사항

제12조(실습기관의 선정) ① 실습교육위원회가 실습기관을 선정한다.

②실습기관은 실습교육을 위하여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실무와 관련된 기관 등이어야 한다.

1. 법원・검찰・경찰실무
2. 변호사실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4. 기업법무
5. 실습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그 밖의 법률실무

제13조(협약사항) 실무교육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도록 실습기관과 협의한다.

1. 실습기관이 수용하여야 할 실습생의 수
2. 본교와 실습기관의 상호 협조의무
3. 실무교육의 원칙
4. 협정의 유효기간
5. 기타 사항

제7장 실습생의 준수사항

제14조(실습생의 의무) 실습생은 실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 종료 후 1주 이내에 실습보고서의 제출
2. 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3. 실습 중 알게 된 실습기관과 관계당사자의 기밀 및 비밀 누설금지

제15조(실습의무 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 해당자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원장은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실습 중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실습 지도를 따르지 않은 자
3.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6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 실습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실습교육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03. 개정)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